

영등포구의회  
제151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』

# 檢 討 報 告 書

2010. 2. 2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 專 門 委 員 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』

# 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신흥식 의원 외 7인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## 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10. 1. 25.
- 제안자 : 신흥식 의원(외 7인)

## ■ 제정(제안) 이유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,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·신고된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## ■ 주요골자

-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함(안 제5조)
-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규정함(안 제7조)
-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규정함(안 제8조)
- 센터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, 제10조, 제11조)
- 센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·점검하도록 규정함(안 제14조)

## ■ 관련법규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 · 제16조 · 제19조
-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13조
- 「아동복지법 시행규칙」 제10조 · 제11조

## ■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- 서대문구, 성동구, 중구, 중랑구, 양천구

## 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임 등을 정하였고,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이용대상, 센터의 사업 및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,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·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, 안 제14조에서는 보칙으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습니다.
-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제1항 규정을 보면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”로 규정하고 있으며,

-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센터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 센터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내실있는 센터의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,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10. 2. 2.

보 고 자 : 이 남 식

【참고자료 : 관련 법령】

## 관 련 법 령

### ■ 아동복지법 [시행 2008.12.14] [법률 제9122호, 2008.6.13, 일부개정]

#### 제4조 (책임)

-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.
  - 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,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.
  -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<신설 2006.9.27>

#### 제16조 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

- 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4.1.29>

11. 지역아동센터 :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·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#### 제19조 (아동복지시설종사자)

- ①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.
- ②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,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■ 아동복지법 시행령 [시행 2009.6.14] [대통령령 제21529호, 2009.6.9, 일부개정]

#### 제13조 (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)

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고,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### ■ 아동복지법시행규칙 [시행 2009.7.1] [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2호, 2009.7.1, 타법개정]

#### 제10조 (시설의 설치신고 등)

-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6.8, 2005.10.17, 2006.7.3>

1. 정관(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
2.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(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)

3. 삭제 <2006.7.3>
4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5.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
6. 시설의 평면도(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) 및 건물의 배치도
7. 삭제 <2002.12.26>
8.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(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,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)

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을 확인하여야 한다.

<신설 2006.7.3, 2009.1.5, 2009.6.12>

③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동복지 시설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7.3>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고, 시·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06.7.3, 2008.3.3>

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, 시설의 장,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신고증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7.3>

1. 명칭변경의 경우 :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)
2. 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: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)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
3. 소재지 변경의 경우 :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) ·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
4. 정원 변경의 경우 :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정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) ·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(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한다) 및 재산활용계획서

### 제11조 (시설기준 등)

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고,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.